

내 손 안의 자율준수편람

에피다움

<하도급법 편>

자율준수사무국
Compliance담당

**"하도급법,
이것만큼은 알아야 에피다움 "**

하도급법에는 우리의 9개 의무와 13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 단계

- 서면교부/보존 의무 (3조)
- 내국산용장 개설 의무 (7조)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13조의2)

- 부당특약 금지 (3조의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4조)

계약이행 단계

- 선급금 지급 의무 (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6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6조의2)

- 부당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8조)
-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18조)

대금지급 단계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9조)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3조)
-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 (15조)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5조)
- 부당 반품 금지 (10조)
- 감액 금지 (11조)
- 물품 구매대금 부당 결제 청구 금지 (12조)
- 부당 대물변제 금지 (17조)
- 보복조치 금지 (19조)
- 탈법행위 금지 (20조)

본 책자는 의무와 금지사항 중 주요 사항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책자에서 다루지 않은 하도급법 내용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도급법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개시 전 서면 교부 의무

Biz Partner 작업 개시 前
7가지 법정 필수 기재사항 및 양사 기명 날인(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Biz Partner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한다.

부당특약 금지

Biz Partner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하도급계약에 설정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금지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선금금 지급 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Biz Partner에게도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증액 사실을 15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알리고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Biz Partner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 증빙서면을 남긴다.

부당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는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Biz Partner의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Biz Partner의 작업완료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수령 후 15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감액 금지

계약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하지 않는다.

1. 서면 교부 (하도급법 제3조)

- SKEP는 Biz Partner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 필수 기재사항과 양사 기명날인(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Biz Partner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서면은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 명칭에 불문합니다.
- 기존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고, Biz Partner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Biz Partner에게 교부한 서면은 하도급 종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태료,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서면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하도급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서면에 아래 7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탁 목적물(Biz Partner에게 위탁하는 것)의 내용과 위탁 일자
2. 목적물 완공(인도) 시기와 장소
3.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SKBP가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 제공일, 대가 지급 방법 등
6. Biz Partner가 공급원가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절차 등
7.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주요 원재료 및 가격 기준 지표, 대금 조정 요건, 방법 등

Q) 필수 기재사항이 협의 중이라면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A) 서면에 미확정 사유와 확정 예정일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내용이 확정되면 즉시 서면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예)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원재료 근거 자료에 대한 출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번 달 말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확정한다.

대표 위반 사례

- D산업이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① Biz Partner가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야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② 서면을 발급하면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례 (2018건하1299, 의결 2019-206)
- S건설이 Biz Partner에게 기존 하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의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사례 (2021광사1505, 의결 2023-61)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04p.부터 105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서면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서면의 내용이 실제 하도급계약 내용과 동일한가



필수 기재사항 미확정시, 미확정 사유와 확정 예정일을 기재하였는가



양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가



서면은 작업 투입 이전에 발급하였는가

2. 대금 지급 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 SKEP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지급 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보증은 법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현금 지급 또는 보증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항상 추가 보증을 제공해야 하나요?

A) 추가 공사가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미한 공사라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아래 기관들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공제조합
6.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위반 사례

- D산업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

(2024.7.8. 보도)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50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였는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에 기재된 목적물 및 대금 금액, 준공일자 등 정보가 하도급계약 내용과 일치하는가

3.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 SKEP는 하도급계약서에 Biz Partner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 내용(부당특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나요?

A) 부당특약의 대표적인 유형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당시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Biz Partner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약정

예)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첨부 및 기명날인, 교부 유무와 관계 없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며,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Biz Partner가 부담한다.

예) 본 계약서 작성 및 교부 후 체결되는 확약서, 협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별도 교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Biz Partner가 부담한다.

2. 계약당시 기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견적 산출 관련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용을 Biz Partner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약정

예)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계약서에 첨부하여 교부한 부속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며,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Biz Partner가 부담한다.

예) Biz Partner는 계약서와 함께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거래관행상 직접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Biz Partner에게 전가하는 약정

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민원은 Biz Partner의 비용으로 최우선 처리하며, Biz Partner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 Biz Partner의 업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와 관련한 진료비, 노무비, 합의금 등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Biz Partner가 부담한다.

예)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는 Biz Partner가 득하며, 관련 비용 역시 Biz Partner가 부담한다.

예) 완성 후 인도한 계약 목적물의 검사 비용은 Biz Partner가 부담한다.

예)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비용 일체는 Biz Partner가 부담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Q & A

4.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중하는 등 Biz Partner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

예) Biz Partner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이행보증 외의 추가 보증 내지 현금을 지급한다.

예) Biz Partner는 재작업, 추가 작업, 보수 작업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귀책 유무와 관련 없이 Biz Partner가 일체 부담한다.

예) Biz Partner는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위탁 내용의 확인 요청, 목적물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행사를 포기한다.

예) 공사 대금 중 10%는 지급을 유보하며, 전체 사업이 종료된 때 지급한다.

예) 채무불이행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Biz Partner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예)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산점은 목적물 인도 시가 아닌 전체 사업이 종료된 때로 정한다.

대표 위반 사례

- D주택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민원 처리 비용,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유무와 관계 없이 Biz Partner가 일체 부담하게 하고, ② 관련 인·허가 비용과 작업 지시에 따른 추가 비용을 Biz Partner에게 전가하면서, ③ Biz Partner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에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사례
(2024. 7. 4. 보도)
- S건설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태업하거나 공기가 지연될 경우 ... (중략) ... 설계변경 금액은 원사업자의 안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Biz Partner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한 사례
(2022광사0127, 의결 2023-060)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11p부터 114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현장설명서 등 계약 부속서류와 협의서 등 별도 계약서에 대하여,
공정거래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하도급계약서나 부속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Biz Partner에게
요구하거나, 관련 비용을 Biz Partner에게 부담케 하는 조건이 있는가



관계 법령에서 보호하는 Biz Partner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
이 있는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Biz Partner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일체의’, ‘모든’, ‘전적으로’, ‘제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
가 포함되어 있는가



부당특약 발견 시, 즉시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Biz
Partner로부터 회신 공문을 확보하였는가

4. 대금 부당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SKEP는 Biz Partner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의 대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정상적인 시장 환경 및 거래관계에서, 하도급계약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지급된 내지는 객관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대가인지로 판단하며, 판단의 기준 시기는 계약 당시 또는 계약과 유사한 시점입니다.

Q) Biz Partner와 합의했다면, 하도급대금을 일반적 지급 수준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나요?

A) Biz Partner와 하도급대금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더라도, 합의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수단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낮게 되었다면 부당한 대금 결정에 해당합니다.

Q)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낮지만 양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A) 하도급대금이 적정하지는 지급 대가의 수준 외에도 대금 확정 방법이 공정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지 않더라도, 대가에 대한 Biz Partner의 자율적 의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였다면 부당 대금 결정에 해당합니다. 부당 결정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부 감소원자재 가격하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계약단가 또는 Biz Partner의 견적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예)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Biz Partner의 계약단가를 종전 단가 기준 일정률씩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Biz Partner의 종전 계약단가를 공중별로 일정률씩 인하하는 행위

2. Biz Partner에게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할당한 후, 기존 계약가격이나 견적가격에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예)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등과는 같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 Biz Partner별 절감액을 할당한 후, Biz Partner들의 견적단가 또는 종전 단가에서 해당 절감액을 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행위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Biz Partner의 하도급대금을 다른 Biz Partner와 차별하여 정하는 행위,

예) 다른 Biz Partner와 목적물의 종류, 사양, 작업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해당 Biz Partner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다음 페이지에 계속

Q & A

4.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Biz Partner를 속인 후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예) 확정되지 않은 추가 공사 계획이나 신규 수주 계획 등을 보여주어 추후 물량을 늘려줄 것처럼 Biz Partner를 착오에 빠뜨리고 낮은 단가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예)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공사 위탁 시 보전해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단가 인하에 대한 보전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예) 다른 Biz Partner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보여준 후, 해당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Biz Partner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Biz Partner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 예) 임시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예) Biz Partner와 하도급대금을 합의하였음에도, 경영상황 개선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합의한 것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

6. Biz Partner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

7. Biz Partner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예)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Biz Partner에게, 업계관행 등을 이유로 다시 협상하여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예) Biz Partner에게 다른 Biz Partner가 제시한 최저가 금액을 제공한 후, 해당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Biz Partner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Biz Partner 귀책이 아닌 사유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기존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조정하여 결정하는 행위

- 예) 일정 기간을 정하여 주기적 내지는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 등 Biz Partner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대표 위반 사례

- G건설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례

(2018서건0678, 의결 2021-030)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16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Biz Partner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에 부합하는가



일반적 지급 수준보다 낮다면,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가



일반적 지급 수준보다 낮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Biz Partner의 자율적 의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는 않았는가

5. 선급금 지급 (하도급법 제6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Biz Partner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Biz Partner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금액은 SKEP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릅니다.
- Biz Partner에 대한 선급금은 SKEP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Biz Partner에게 선금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 발주자가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용도와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 발주자가 SKEP에게 초기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전체 도급 금액의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였다면, SKEP도 Biz Partner에게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여 초기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발주자가 내용이나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선금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발주자가 SKEP에 일정 액수의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내용이나 비율은 정하지 않더라도 Biz Partner에게 전체 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대금 비율 상당의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SKEP이 도급 받은 전체 공사 금액이 100억 원이고 Biz Partner의 하도급대금이 30억 원일 때, 발주자가 SKEP에게 10억 원의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내용이나 비율은 정하지 않았더라도, SKEP는 Biz Partner에게 3억 원의 선금금(= 지급받은 선금금 10억 원 × 하도급대금이 전체 공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발주자의 선금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발주자의 선금금 지급 후 15일이 초과하였다면, 해당 사실 확인 즉시 Biz Partner에게 선금금 및 연 15.5%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iz Partner에게도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의 선금금 지급 후 체결되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Biz Partner와 선금금 포기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선금금 포기 약정이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Biz Partner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iz Partner가 선금금에 대한 보증 발행 불가 등 자신의 귀책으로 선금금을 포기하였다면 약정에 따라 Biz Partner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정이 Biz Partner의 귀책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Q & A

Q)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A) 발주자가 SKEP에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SKEP도 Biz Partner에게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선급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SKEP도 Biz Partner에게 선급금 어음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SKEP가 발행하는 어음의 만기일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표 위반 사례

- D종합건설이 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5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Biz Partner에게 7,000여 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

(2024.8.30. 보도)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36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Biz Partner
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가



Biz Partner에 대한 선급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것인가.



Biz Partner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
자도 지급하였는가.



어음을 통한 선급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과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6. 설계 변경 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 Biz Partner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가 도급 금액을 증액한 경우, SKEP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Biz Partner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SKEP는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Biz Partner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대금을 항상 증액해야 하나요?

A) ① 설계 변경 또는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②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어, ③ 발주자가 도급 금액을 증액하였다면, 하도급대금도 증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 산정에 관련된 계약 내용이나 제반 사정이 SKEP나 Biz Partner의 귀책 없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여 도급 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원칙적으로 Biz Partner의 하도급대금도 증액하여야 합니다.

Q) Biz Partner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나요?

A) 도급 금액 증액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는 Biz Partner의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가 하도급대금의 증액 사유에 해당한다면, Biz Partner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여야 합니다.

Q) 증액한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A) 발주자가 증액한 도급 금액을 SKEP에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부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증액 부분을 일시 지급이 아닌 기성금 형태로 지급하였다면, Biz Partner에게도 15일 이내에 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표 위반 사례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증액 내용은 밝히지 않고 단순히 원하는 조정 금액을 신청하라고만 Biz Partner에게 통지한 후, Biz Partner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이유로 협의를 지연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H중공업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사례

(2008하개4185, 의결 2009-085)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47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발주자와 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과 내용, 하도급대금 증액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발주자와 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7. 원가 변동 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의2)

- Biz Partner가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시, SKEP는 조정을 거부할 수 없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는 Biz Partner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개시되어야 하며, SKEP는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Biz Partner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항상 협의해야 하나요?

A) 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Biz Partner가 해당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1.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Biz Partner의 귀책 없이 목적물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iz Partner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내지 비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4. 목적물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iz Partner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제 하락한 공급원가 내지 비용의 비율이 인하한 하도급대금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경우

Q) 공급원가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A) Biz Partner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Q) 협의는 어떻게 개시하여야 하나요?

A) 협의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Biz Partner의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① SKEP의 의견을 회신하거나, ② 일자 등을 제안 및 합의하여 관련 회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으로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개시는 이메일, 공문 등 추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의 준비를 통해 협의를 개시한 경우에는 추후 회의를 실제로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Biz Partner에게 회신하여야 합니다.

1. Biz Partner의 조정 신청 공문 접수일
2. SKEP가 회의를 제안한 서면 일자(협의 개시일)
3. 회의 참석자
4. 협의 내용, 근거자료 목록
5.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진행될 내용(추가협의, 변경계약 체결 등)

대표 위반 사례

- H사가 Biz Partner에게 승강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받았음에도 법정 기간 후에야 협의를 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사례

(2022제하1861,의결 2023-064)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Biz Partner가 대금 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협의 개시는 서면으로 하였는가



회의 준비를 통한 협의 개시 후, 실제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회신하였는가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접수 리스트를 PJT별로 관리하고 있는가

8. 부당 위탁 취소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SKEP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Biz Partner와의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Biz Partner가 납품한 목적물의 수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도 않습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하도급계약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절·지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Biz Partner에게 아래와 같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취소 내지 변경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절 및 지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Biz Partner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Biz Partner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취소 전 최소 3회 이상의 사전예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Biz Partner에게 파산, 회생절차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Biz Partner가 감청·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내지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는 경우
3. Biz Partner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이행을 거부하여, 목적물을 기간 내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Biz Partner가 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하도급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표 위반 사례

- H건설이 공사 지연 및 기간 내 준공 불가를 이유로 Biz Partner와의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Biz Partner의 귀책에 의해 지연된 것이 아니라 판단한 후 시정을 명한 사례

(2012광사2395, 의결 2013-198)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25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하도급계약 취소 또는 변경 시, Biz Partner의 귀책사유를
SKEP 내 유관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였는가



Biz Partner가 제공한 목적물 수령 거부 또는 지연 시, Biz Partner의
귀책사유를 SKEP 내 유관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였는가

9. 기술자료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

- SKEP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Biz Partner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합니다.
-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Biz Partner와 미리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Biz Partner가 협의 및 서면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려 한다면,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기술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SKEP가 Biz Partner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공 방법 관련 자료

예) 설계도면, 공법 관련 자료,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시공 지침 등

2. 기술 관련 자료

예) 기술 개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연구자료, 보고서 등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예) 특허 내지 실용신안권 획득과 관련된 연구자료, 보고서 등

Q)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Biz Partner의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발주처로부터 하도급계약 및 시공 방법을 승인 받기 위해서나 현장 안전 관리 등 관계 법령상 SKEP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자료 요구 시 협의 및 서면 제공 하여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Biz Partner와 아래와 같은 법정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SKEP는 Biz Partner와의 협의 및 기술자료 적법 요구 관리를 위해 시스템(TD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진행 중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TDMS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정거래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밖에 SKEP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대표 위반 사례

- D사가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례

(2025.6.8. 보도)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20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기술자료 요구 전, Biz Partner와 법정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는가



협정한 내용에 대해 Biz Partner에게 서면으로 요구서를
제공하였는가



Biz Partner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전, Biz Partner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위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SKEP TDMS를 이용하고, 공정거래팀과
협의하였는가

10. 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 SKEP는 Biz Partner의 작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 SKEP가 Biz Partner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로부터 완성 부분에 대한 준공금,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하도급대금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금, 기성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사실 확인 즉시, 지급을 지연한 하도급대금 원금 및 연 15.5%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A) 발주자가 SKEP에 현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SKEP도 Biz Partner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공사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SKEP도 Biz Partner에게 선금금 어음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SKEP가 발행하는 어음의 만기일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표 위반 사례

- S종합건설이 석공사를 하도급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 15.5%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

(2023부사0143, 의결 2024-239)

※ 위반 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율준수편람 제8차 개정본 142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 받았는가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Biz Partner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이 없더라도, Biz Partner의 작업 완료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SKEP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
대금 현금 결제 비율 및 어음만기일을 확인하였는가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하였는가

11.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SKEP는 계약 당시 Biz Partner와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더라도, Biz Partner에게 감액사유,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미리 제공합니다.



시정명령(벌점 1점 이상) 또는 과징금
벌금(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

Q & A

Q) 부당한 감액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Biz Partner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상,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지는 감액 행위는 아래 행위 이외라도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계약 시 대금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Biz Partner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설정한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조 요청 또는 발주자의 거래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일방적으로 무리한 공기를 정하여 계약한 후, Biz Partner의 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정하여 계약한 후, 구체적인 산출내역 상 Biz Partner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Biz Partner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의 합의를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추가 공사에 대해 기존 공사 대비 인화된 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단가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행위

3.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예) 하도급대금을 Biz Partner의 작업 완료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Biz Partner가 하도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귀책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Biz Partner가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완성하였으나, 검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염, 훼손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Biz Partner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하기로 한 후,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산정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예) Biz Partner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그 대가는 실비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시 장비 제공 대가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산정하여 공제하는 행위

예) 하도급계약 당시 Biz Partner로 하여금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장래 기간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다음 페이지에 계속

Q & A

6.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계약이나 납품 당시 시점 대비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목적물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 가격이 계약 또는 인도 이후 대금 지급 시점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Biz Partner로 하여금 임금 인상, 실적 부진,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라는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관계법령 내지 거래관행상 직접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Biz Partner에게 전가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관리비 등을 Biz Partner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예) 영업활동비, 기타 경비 등 관련 비용을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Biz Partner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Q) 계약 체결 당시에 결정된 하도급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나요?

A) 감액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 및 변경계약은 서면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감액 사유가 정당한지도 반드시 유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계약체결 당시의 대금 산정 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예) 하도급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발견하고, Biz Partner와 협의하여 수정하는 행위

2. Biz Partner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을 시정하고, 해당 비용 상당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예) Biz Partner의 귀책으로 목적물에 발생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보수한 후, 해당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다음 페이지에 계속

Q & A

Q) 감액을 진행하기 위해 Biz Partner에게 제공하는 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포함한 서면을 Biz Partner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감액 사유와 그 기준
2. 감액 대상 목적물의 물량
3. 감액 금액
4. 공제 등 감액 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대표 위반 사례

- H사가 Biz Partner에게 너트 제조를 하도급 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당시 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사례

(2023서제1326, 의결 2025-089)

여기서 잠깐!

꼭 확인해야 할 Self Checklist



Biz Partner에게 지급하려는 하도급대금이 최초 계약서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가



하도급계약 감액 시,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SKEP 내 유관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였는가



감액에 대하여 Biz Partner와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미리 제공하였는가

